제규정관리규정

제정 2009. 7. 23. 개정 2009. 12. 31. 개정 2010. 6. 29. 개정 2012. 4. 18. 개정 2013. 10. 22. 개정 2014. 11. 4. 개정 2018. 10. 23. 개정 2022. 4.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흥원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규정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제규정"이라 함은 진흥원에서 계속적·반복적 효력을 갖는 규범적인 문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 가. 규정 : 진흥원의 기본조직 및 그 운영과 직원의 권리·의무 등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 나. 규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부분적인 업무에 관한 것으로써,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사무처리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거나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규칙으로본다. <개정 2018. 10. 23>
 - 다. 지침: 규정·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 및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의 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 2.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제규정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8>
 - 3. "소관부서장"이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 4. "사전예고"라 함은 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제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이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10.22.>

- 제4조(관리원칙) ① 진흥원의 관리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규정으로 제정·운용함으로써 관리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규정은 규칙에 우선하며, 동순위의 규정 또는 규칙 중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후에 제정된 규정 또는 규칙이 우선한다.
 - ③ 제규정은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급적용할 수 있다.
 - ④ 제규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위반여부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5조(규정관리심의회)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규정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규정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제규정안의 제출 및 심의) ① 제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 소관부서장은 제 규정안을 기안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함께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하 려는 제규정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1.>
 -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접수하여 감사실장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
 - ③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제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의 체계, 형식, 내용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제 2항의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따른 회신결과와 함께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 ④ 주관부서장은 진흥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 제7조(제정권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규정안 중 규정은 원장의 결재 후 정관 제1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 규칙은 원장의 승인으로, 지침은 주관부서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제8조(사전예고제 및 의견청취) ①소관부서장은 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 미리 제·개정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 제출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3.10.22.><개정 2022. 4. 1.>
 - 1. 제·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2. 당해 제규정을 심의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
 - 3. 제·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4. 사전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제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11.4.>
 - 1. 개인정보보호규칙<신설 2014.11.4.>

- 2. 정보공개규칙<신설 2014.11.4.>
- 3. 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규칙<신설 2014.11.4.>
- 4.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지침<신설 2014.11.4.>
- 5.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신설 2014.11.4.>
- ③ 사전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10.22.><개정 2014.11.4.>
- ④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개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2.><개정 2014.11.4>
- ⑤ 주관부서장은 제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 및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2.><신설 2014.11.4.>
- 제9조(제규정의 해석) ① 제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제규정의 해석을 심의회에 구한 뒤, 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제규정의 해석내용을 관련부서 및 직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제규정의 관리) 주관부서장은 확정된 제규정의 신속·정확한 배포와 규정집의 효율적·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제규정 공개) 제규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업비밀 등에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2009. 7.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0. 6. 29.>

이 규정은 2010년 6월 29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2. 4. 18.>

이 규정은 2012년 4월 18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4.>

이 규정은 2014년 11월 4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8. 10.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